

감 사 원

통보·통보(시정완료)

제 목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소 관 기 관 시흥시 등 [별표] 기재 8개 기관

조 치 기 관 시흥시 등 [별표] 기재 8개 기관

내 용

1. 업무 개요

시흥시 등 [별표] 기재 8개 기관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등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상속인에 대하여 취득세 및 그에 따라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등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 제21조 제1

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2항 등에 따라 산출세액 신고·납부 대상 세액에 가산세⁵⁶⁾를 더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흥시 등 시·군·구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 각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2018. 4. 23.~5. 18.) 중 시흥시 등 [별표] 기재 8개 시·군·구가 2014년 이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상속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실태를 확인한 결과, 시흥시 등 8개 시·군·구는 [별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현황”과 같이 상속인들이 취득세 등 계 694,125,000원(117건)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시흥시 등 8개 시·군·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상속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시흥시 등 5개 시·군·구⁵⁷⁾의 장은 취득세 등을 미부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지방

56) 무신고가산세(취득세 신고대상금액×20%)+납부불성실가산세[신고·납부대상금액(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납부지연일수×0.03%]

57) 시흥시, 하남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법」 제21조 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2018년 5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조치 등을 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3개 자치구⁵⁸⁾의 장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58)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별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현황

(단위: 원)

연번	기관명	파상속인	상속개시일	미부과액(가산세 포함)
1	시흥시	-	2016. 6. 3.	16,142,720
2		-	2017. 3. 8.	8,746,870
3		-	2016. 4. 6.	4,638,410
4		-	2015. 7. 12.	4,316,020
5		-	2015. 4. 3.	3,457,480
6		-	2015. 11. 20.	2,398,000
7		-	2015. 12. 8.	1,766,370
8		-	2015. 4. 14.	3,198,170
9		-	2016. 3. 14.	4,630,080
10		-	2015. 4. 11.	6,501,880
11		-	2015. 5. 7.	5,156,400
12		-	2015. 2. 28.	23,749,830
13		-	2015. 2. 15.	15,690,050
14		-	2016. 4. 4.	127,483,080
15		-	2016. 9. 13.	11,183,410
16	하남시	-	2014. 8. 6.	54,550,100
17		-	2014. 11. 3.	10,010,710
18		-	2014. 3. 2.	170,960
19		-	2014. 3. 2.	2,464,800
20		-	2014. 12. 6.	28,050
21		-	2014. 5. 25.	12,773,290
22		-	2014. 6. 6.	343,410
23		-	2014. 8. 22.	63,736,780
24		-	2014. 3. 1.	343,440
25		-	2014. 11. 18.	5,791,990
26		-	2014. 3. 20.	124,070
27		-	2015. 1. 14.	159,310
28		-	2015. 4. 19.	82,920
29		-	2015. 5. 23.	156,560
30		-	2015. 5. 30.	317,030
31		-	2015. 5. 30.	366,810
32		-	2015. 6. 29.	214,160
33		-	2015. 7. 20.	235,390
34		-	2015. 7. 21.	62,030
35		-	2015. 8. 3.	115,140
36		-	2016. 1. 5.	44,928,260
37		-	2016. 3. 29.	106,950
38		-	2016. 4. 15.	201,280

연번	기관명	파상속인	상속개시일	미부과액(가산세 포함)
39	하남시	-	2016. 4. 22.	46,120
40		-	2016. 6. 2.	11,109,380
41		-	2016. 6. 7.	220,610
42		-	2016. 7. 13.	252,130
43		-	2016. 9. 5.	536,970
44		-	2016. 9. 16.	1,295,480
45		-	2016. 10. 2.	321,130
46		-	2016. 10. 8.	1,474,470
47		-	2016. 10. 10.	879,000
48		-	2016. 10. 12.	2,031,860
49		-	2016. 10. 24.	160,150
50		-	2016. 11. 7.	6,378,040
51		-	2016. 12. 29.	1,589,380
52		-	2017. 1. 7.	1,567,860
53		-	2017. 1. 22.	10,421,060
54		-	2017. 2. 12.	388,150
55		-	2017. 2. 23.	8,713,530
56		-	2017. 3. 5.	2,236,920
57		-	2017. 3. 21.	7,224,680
58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4. 6. 26.	18,650,160
59		-	2016. 12. 2.	10,446,780
60		-	2017. 5. 25.	12,060,880
61		-	2017. 9. 29.	6,758,520
62	서울특별시 송파구	-외 2	2017. 3. 23	5,356,350
63		-외 2	2017. 3. 10.	3,809,470
64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 3. 23	3,040,760
65		-	2017. 3. 10.	380,890
66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6. 6. 2.	653,800
67		-	2016. 7. 10.	932,930
68		-	2016. 7. 18.	1,714,500
69		-	2016. 7. 17.	3,701,950
70		-	2016. 8. 19.	1,584,790
71		-	2016. 10. 21.	988,870
72		-	2016. 11. 6.	767,720
73		-	2016. 11. 10.	1,801,300
74		-	2016. 10. 21.	1,419,850
75		-	2016. 11. 14.	302,310
76		-	2016. 11. 24.	908,310
77		-	2016. 11. 19.	3,679,270
78		-	2016. 12. 29.	839,410
79		-	2017. 1. 21.	3,260,760

연번	기관명	파상속인	상속개시일	미부과액(가산세 포함)
80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7. 1. 31.	405,530
81		-	2017. 2. 7.	3,638,340
82		-	2017. 2. 8.	267,840
83		-	2016. 12. 28.	4,479,630
84		-	2017. 2. 11.	1,574,680
85		-	2017. 1. 28.	740,560
86		-	2017. 2. 16.	2,137,990
87		-	2017. 1. 28.	5,629,820
88		-	2017. 2. 14.	4,463,540
89		-	2017. 3. 23.	579,840
90		-	2017. 3. 28.	4,046,400
91		-	2017. 3. 31.	2,686,200
92		-	2017. 4. 2.	802,180
93		-	2017. 4. 3.	3,253,100
94		-	2017. 3. 17.	3,529,590
95		-	2017. 4. 15.	359,570
96		-	2017. 4. 21.	1,271,660
97		-	2017. 4. 2.	887,200
98		-	2017. 4. 12.	8,132,760
99		-	2017. 5. 17.	6,130,720
100		-	2017. 5. 27.	7,954,410
101		-	2017. 5. 5.	8,058,360
102		-	2017. 6. 6.	225,150
103		-	2017. 7. 6.	266,420
104		-	2017. 6. 15.	946,590
105	울산광역시 남구	-	2017. 7. 29.	13,459,180
106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4. 6. 25.	3,494,870
107		-	2015. 2. 15.	2,863,760
108		-	2015. 2. 13.	1,169,840
109		-	2015. 5. 7.	770,320
110		-	2015. 5. 13.	1,536,490
111		-	2015. 8. 18.	3,844,100
112		-	2016. 1. 18.	2,530,910
113		-	2016. 3. 15.	3,674,560
114		-	2016. 3. 28.	3,229,730
115		-	2017. 1. 24.	2,722,690
116		-	2017. 2. 23.	3,830,910
117		-	2017. 5. 2.	2,280,850
계				694,125,000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